

의안번호	2212311
의 퇴 인	김영진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계번호	25F453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제결제은행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제4항 (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 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)	○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항목에 국제결제은행(BIS)의 국내 이자소득 등 추가 －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예금이자,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 차익,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 면제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제4항 (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 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예금이자,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
차익,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에 따라 법인세수
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1조제4항)
- 현행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 조항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
법인의 해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, 유가증권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적용
되고 있으나, 국제결제은행의 국내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
 - 개정안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 및 투자소득 등에 대
하여 법인세를 면제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금이자,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,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지만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- 국제결제은행의 연간 보고서¹⁾에 따르면, 총수입(Total income)은 2024/2025회계년도 기준 12.5억SDR(특별인출권)로, 이 중 이자소득(Interest income)은 6.9억SDR 수준으로 나타남
 - 그러나 개별 국가에서의 수입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, 개별적인 투자(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이나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등)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활용할 수 없음
 - － 참고로, 국제결제은행의 2024/2025년 총수입은 12.5억SDR, 영업비용(Operating expense)은 4.1억SDR로 순이익은 8.4억SDR 수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

1) 국제결제은행(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), 「Annual Reports 2024/25」, 2025.5.